

## I 공교육정상화법이란?



"2014년 9월 12일부터 시행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약칭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교 내 공정한 경쟁과 교사들의 정상적인 수업을 촉진하여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 함양을 포함한 전인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그동안 공교육정상화법은 초·중·고등학교에서의 교육 과정 정상화를 통해 선행교육으로 인해 나타났던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저하 등과 같은 문제점들을 극복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해왔습니다.

2019년 3월 교육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공교육정상화 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공교육정상화법은

초·중·고등학교에서 모든 학생이 꿈을 이루고 미래를 여는 행복한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든든한 공교육의 지킴이가 될 것입니다.

**공교육  
정상화법**



## II 공교육정상화법, 이렇게 운영됩니다!



### 선행학습이 필요 없는 학교 수업 실시



학교가 편성해서 공시한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 학교수업 및 방과후학교 실시

\* 입학예정학생 대상 예비수업은 이전 학교급의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에서 실시

### 학교시험은 배운 내용에서만 출제

학교시험(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및 각종 교내대회 등은 배운 내용에서만 출제

\* 입학예정학생 대상 반편성고사 평가는 이전 학교급의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에서 실시



### 사교육 없이 준비할 수 있는 공정한 입학 전형 마련



특성화중, 특목고, 자사고 등의 입학전형은 입학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 실시

• 논술, 면접, 구술고사 등 대학별고사는 고등학교 범위와 수준 내에서 실시

• 학교 및 대학의 입학전형에 대한 선행학습 영향 평가 실시

### 선행학습을 유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철저

•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에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과정운영, 선행교육방지대책, 선행학습 영향평가 등 심사·의결

• 공교육정상화법 위반시, 학교 및 대학에 시정 및 변경 명령하고, 미이행시, 학생정원·학급·학과의 감축·폐지 등의 행·재정적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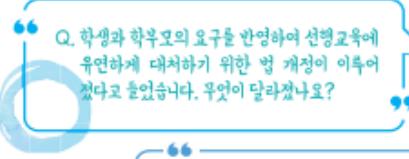
## III 공교육정상화법, 무엇을 규제하나요?



"**공교육정상화법에서는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등을 규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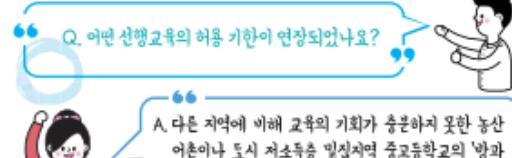
시행 단위	규제 대상	규제 범위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선행교육 (교육과정 편성·운영)	앞서서 편성 국가 교육과정 및 시·도교육과정을 앞서는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하는 경우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학교교육과정을 운영(제공)하는 경우
	입학 예정 학생	입학 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 후 학교교육과정을 미리 운영하는 경우
대학	재학생 선행학습 유발행위 (평가)	교과 평가 (지필·수행 평가) 학교교육과정에 따라 편성한 교과별 (학년별) 진도계획을 앞서서 평가하는 경우(배운 범위와 수준을 앞서는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경우)
		각종 교내대회
	입학 예정 학생	입학 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상급학교 (입학 예정 학교)의 학교교육과정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경우
대학별고사	응시 학생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경우

## IV 공교육정상화법,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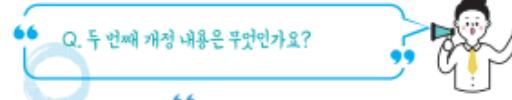
**Q.**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하여 선행교육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한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고 들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나요?

**A.** 두 가지가 달라졌는데요, 첫 번째는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 법을 만들 때 2019년 2월 28일까지 허용하기로 했던 일부 선행교육의 허용 기한이 2025년 2월 28일로 연장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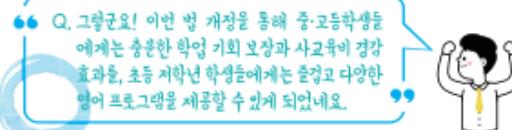
**Q.** 어떤 선행교육의 허용 기한이 연장되었나요?

**A.** 다른 지역에 미래 교육의 기회가 충분하지 못한 농산 어촌이나 도시 저소득층 일정지역 중고등학교의 '방과 후학교'를 통한 선행교육이 그때까지 허용됩니다. 또, 고등학교에서는 휴업일에 '방과후학교'를 통한 선행 교육을 할 수 있었습니다.



**Q.** 두 번째 개정 내용은 무엇인가요?

**A.**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양과후학교 허용입니다. 이는 2018년 3월부터 금지되었는데, 이번에 법을 개정하면서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양과후학교'는 공교육 정상화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만들었어요. 이제 놀이 활동 중심의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양과후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Q.** 그렇군요! 이런 법 개정을 통해 중·고등학생들에게는 충분한 학업 기회 보장과 사교육비 경감 효과를, 초등 저학년 학생들에게는 즐겁고 다양한 영어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네요.

## V 공교육정상화법, 오해와 진실

Q. 학생이 스스로 공부하는 선행학습도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금지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공교육정상화법은 학습자가 자발성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공부하는 선행학습까지 금지하지 않습니다.

Q. 공교육정상화법으로 선행교육이 금지되면 학교 내에서의 교육 활동이 위축되지 않을까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국가수준 교육과정 및 시·도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따라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기르치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공교육정상화법은 학교에서의 선행교육을 금지하고 선행학습 유발 요인을 억제함으로써 학습 부담을 줄이고 학교 교육활동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Q. 학교에서 선행교육을 하지 않도록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하려면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A.** 초등학교는 학년군을 앞서서, 중·고등학교는 학교급을 앞서서 학교 교육 과정을 편성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한 후에는 계획된 학교 교육과정에서 학기나 학년(군) 또는 학교급을 앞서서 운영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Q. 교과 간 혹은 교과 내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교과 내 또는 교과 간의 일부 내용을 앞서서 가르치고 평가하는 경우는 선행교육에 해당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의 교과 교육과정 재구성을 위해 교과별(학년별) 진도 계획을 편성 또는 수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일부 내용을 앞서서 가르치고 평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한 학기 단위를 넘어서는 재구성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정보 공시에 반영하여 계획과 운영의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미래를 여는 행복한 교육 만들기

# 공교육 정상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안내



미래를 여는 행복 교육,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 다 함께 만들어갑니다.